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요건 강화〉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0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요건 강화(안 제11조의6 제5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8.

다. 회 부 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요건 강화

(안 제11조의6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음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가 화재방지성능¹⁾을 갖추도록 하고,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²⁾³⁾.

또한,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⁴⁾을 갖춘 자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⁵⁾.

-
- 1)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2)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3) 화재방지성능인증 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 4)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소방용품의 시험·검사·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중 하나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③ 전문인력(기술책임자 1명 이상, 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추는 것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 5)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11조의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1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담배사업법」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⁶⁾, 지정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재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지정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인증기관의 부정행위를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지하고 피우는 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은 검사기관·인증기관 등이 지정취소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별도의 재지정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도 다수 있어,

재지정 제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인증기관의 위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관련 입법례]

구분	법률명	주요 내용
재지정 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취소 시 2년 내 재지정 신청 불가
	「식품산업진흥법」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2년 내 재지정 신청 불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취소 시 2년 내 재지정 불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부품안전인증 업무 지정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1년 이내 재지정 신청 불가
재지정 제한 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신청 제한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신청 제한 없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신청 제한 없음
	「자동차관리법」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재지정 신청 제한 없음

다음으로, 재지정 제한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인증기관이 악의적 행위 없이 인력요건 등 단순 자격요건 미달로 지정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요건을 다시 갖추어 신청하였음에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은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⁷⁾,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과 함께 재지정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인증기관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지정취소 사유, 인증기관의 고의·과실 정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재지정을 제한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정취소 사유별로 재지정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음⁸⁾.

7)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

한편, 개정안은 재지정 제한의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이 법 시행 이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재지정 신청 제한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재정경제부는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재지정 제한 규정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며, 현행 담배 수입판매업자와 소매인 등에 대한 2년 이내 재지정 제한 규정⁹⁾을 감안할 때 재지정 제한 기간도 적절하다는 입장임.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9) 「담배사업법」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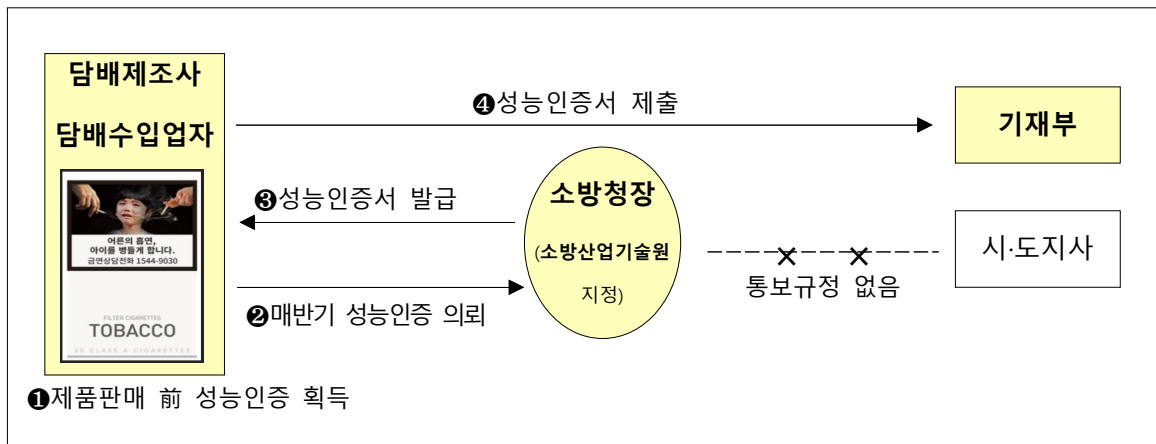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고

화재방지성능인증 의무제도

- **[내용]** 화재방지성능*을 갖춘 저발화성담배 인증을 갖춘 담배만 판매해야 하며, 매 반기마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의무화

* 불을 붙인 후 일정시간 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



- 성능기준 : ISO가 정한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시험 방법(ISO 12863) 준수

- 인증기관 :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정)

- **[대상]** 판매* 중인 모든 담배

* 제조·수입사가 유통사·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소매점 판매 중 담배 x)

- 위반시 제재

- 인증서 미제출 담배의 제조·수입 판매 :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허가취소(제조업자) 또는 등록취소(수입판매업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60